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-376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7년 05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

세운6-3-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(안)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세운6-3-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2. 공람 · 공고 내용

가. 사업명칭 : 세운6-3-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310-2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 : 5,573.1㎡

라. 건축계획 : 지하8층/지상20층, 연면적 62,095.36㎡,

공동주택(714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

마. 정비기반시설 : 녹지 1,293.7㎡

3. 공람기간 : 2017.05.17 ~ 2017.05.31.(14일간)

4. 시 행 자

○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3호(역삼동, 한신인텔빌24) (☎) 2222-5001

○ 성 명 : 더 유니스타제이차(주) 대표 박래영

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

6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3)

7. 관계도서 : 세운 6-3-3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 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 랑 의 견 서

사 업 명	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			
공 랑 기 간	2017년 05월 17일 ~ 2017년 05월 31일			
대상물건지	건물 :			
	토지 :			
의견제출인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전 화 번 호	
내 용				

2017. . .